

## 외국에서 성립한 미성년자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sup>1)</sup>

### I. 사실관계

2017년 7월, 미성년자의 혼인을 규제하기 위해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가 도입되었다.<sup>2)</sup> 같은 해 7월 22일부터 시행된 해당 조항은 외국법에 따라 체결된 미성년자의 혼인이 - 경과규정인 민법시행법 제228조 제44단 제4항의 예외를 제외하고 - 적어도 당사자 중 1인이 혼인 당시 16세 미만이었다면 독일법에 따라 무효임을 직접 법적 명령(rechtliche Anordnung)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위헌제청 사건의 발단은 2015년 2월 시리아의 샤리아 법원에서 그곳의 법에 따라 혼인한 1994년생 남성과 2001년 1월생 여성에 관한 가정법원 사건이다. 두 사람은 모두 시리아 국적자이며, 자국에서의 전쟁 상황으로 인해 함께 피난하였고, 독일에는 2015년 8월에 도착하였다. 지역 관할 청소년복지청은 위 여성의 신병을 확보하고,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여성 난민을 위한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지내게 하였다. 나아가 청소년복지청은 가정법원에 위 여성에게 후견인을 임명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가정법원은 위 여성에 대한 친권이 정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청소년복지청을 관청후견인(Amtsvormund)으로 지정하며 후견인으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위 남성은 시리아 법에 따라 혼인이 유효함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청소년복지청의 보호 조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아내를 돌려달라고 신청하였다.

본 사건의 마지막 심급이었던 연방법원은 소송절차를 정지시키고, 혼인 체

1) 연방헌법재판소 2023. 2. 1. 결정, 1 BvL 7/18.

2) Art. 13 Abs. 3 Nr. 1 EGBGB in der Fassung des Gesetzes zur Bekämpfung von Kinderehen vom 17. Juli 2017 (BGBl I S. 2429).

결 당시 16세 미만이었다면 외국법에 따라 혼인 적령(適齡)인 미성년자가 체결한 혼인을 독일법에 따라 - 경과규정인 민법시행법 제229조 제44단 제4항의 예외를 제외하고 - 개별 사안에 대한 심사 없이 무효로 규정하는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가 기본법 제1조<sup>3)</sup>, 제2조 제1항<sup>4)</sup>, 제3조 제1항<sup>5)</sup> 및 제6조 제1항<sup>6)</sup>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판을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연방법원은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가 외국에서의 혼인을 독일에서 무효로 규정한 것이 특히 기본법 제6조 제1항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II. 주문

1. 2017. 7. 17. 미성년자의 혼인 규제를 위한 법률(Bundesgesetzblatt I S. 2429)을 통해 도입된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는 - 민법시행법 제229조 제44단 제4항의 예외를 제외하고-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는 2024. 7.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까지 D II 2의 사유<sup>7)</sup>에 따라 계속 적용된다.

## III. 심판대상 및 쟁점, 관련조항

### 3) [독일 기본법 제1조]

(1)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2) 이에 독일 국민은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3)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과 집행 및 사법을 구속한다.

### 4)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 5)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 6) [독일 기본법 제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7) 해당 내용은 이 글에서는 IV. 3.에 기재.

## 1. 심판대상 및 쟁점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2017. 7. 17. 미성년자의 혼인 규제를 위한 법률 (Bundesgesetzblatt I S. 2429)을 통해 도입된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의 위헌 여부이며, 해당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3) 약혼자의 혼인 적령이 제1항에 따라 외국법에 기반한 경우 해당 혼인은 독일법에 따라

1. 해당 약혼자가 혼인 체결 시에 16세 미만이었다면 무효이며,
2. 해당 약혼자가 혼인 체결 시에 16세 이상 18세 미만이었다면 취소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에서 체결된 미성년자의 혼인을 독일 국내에서 인정하는 법률조항이 어떤 헌법적 요청 - 특히 기본법 제6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혼인의 자유로부터 요구되는 요청 - 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 2. 관련 조항

### 민법시행법 제13조

- (1) 혼인의 요건은 각 약혼자가 속한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 (2) 이에 따른 전제조건이 누락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독일법이 적용된다.

1. 약혼자가 독일에 상거소를 갖고 있거나 독일인인 경우,

2. 약혼자들이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3. 혼인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혼인의 자유와 합치되지 않는 경우; 특히 약혼자의 이전 혼인은 그 존속이 여기서 내려지거나 인정된 결정을 통해 폐지되었거나 약혼자의 배우자가 사망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4) 생략

#### **민법시행법 제229조 제44단 제4항**

제13조 제3항 제1호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1. 미성년 배우자가 1999년 7월 22일 이전에 태어난 경우, 또는

2. 외국법에 따라 유효한 혼인이 미성년 배우자가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지속되었으며, 혼인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미성년 배우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배우자가 독일에 상거소를 갖지 않은 경우.

#### **IV. 판단**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는 헌법상 요청을 온전히 충족하지 않는다. 위 조항은 동법 제229조 제44단 제4항의 예외를 제외하면 기본법 제6조 제1항을 통해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입법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최소 연령을 기준으로 외국에서 체결된 혼인의 유효 여부를 규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행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는 후속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성년이 된 이후에 혼인을 독일 내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협의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 **1. 헌법상 혼인**

기본법 제6조 제1항상의 혼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결정에 기초한 동등하며 자주적으로 형성된 지속적인 생활공동체이다. 혼인은 혼인체결을 통해 공식적이고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행위로 성립한다. 인권으로서 혼인의 자유는 독일과 외국 국적자 및 무국적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기본법 제6조 제1항의 보호범위는 순수하게 국내에서 체결된 혼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혼인생활공동체는 혼인이 어느 곳에서 어떤 법규정에 따라 체결되었는지, 혼인 또는 가족 결합의 법적 효력을 독일 또는 외국법에 따라 판단하는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혼인체결의 자유는 혼인체결 및 이에 관한 객관적 요건에 대한 법적 규정을 요청하며 이를 허용한다. 그러한 규정은 혼인제도를 규정짓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리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 원리는 기본권의 자유권적 성격 및 기타 헌법 규범과 관련하여 기본법 제6조 제1항을 기존의 전통적 삶의 형태와 연결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 원칙들이다. 여기에는 기본법 제6조 제1항(과 연계한 기본법 제3조 제2항<sup>8)</sup>)에 의해 보호되는 혼인에서 당사자들이 상호 동등한 동반자관계에 있고, 개인적·경제적 삶을 공동 책임하에서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법적 관계 형성에서 배우자 일방의 지배는 배제된다는 점이 포함된다. 동등한 동반자관계와 부부의 공동 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는 이러한 구조원리는 혼인이라는 공동체의 삶의 종류와 방식을 어떻게 형성할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박탈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법자는 헌법적 구조원리에 기속되므로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해야 하는 관계에서 일방의 지배적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입법자는 동등한 동반자 관계의 구조원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조건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

8) **[독일 기본법 제3조 제2항]**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의 실제적 실현을 증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를 통한 혼인의 자유 제한

혼인의 자유에 관한 보호 범위를 다루고 있는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는 기본법 제6조 제1항상의 혼인의 구조원리에 합치한다. 그러나 민법시행법 제229조 제44단 제4항의 예외를 제외하면, 문제된 조항은 후속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성년이 된 후에 독일 내에서 혼인을 유효하게 지속할 가능성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혼인의 자유를 부적절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따라서 협의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가. 문제된 조항에서 법률로 직접 명하고 있는 외국에서 유효하나 국내에서는 무효가 되는 혼인에는 헌법상 구조원리에 배치되지 않고 기본법 제6조 제1항상 혼인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혼인도 포함된다. 기본법으로 보호되는 혼인은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기반한 동등한 동반자관계이자 부부의 공동 책임하에 가능한 생활공동체이지만, 이러한 혼인은 원칙적으로 혼인 당사자가 결속을 하려는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이는 혼인체결 시에 강제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인격적 발달을 필요로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는 발달상황상 이러한 상태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미성년자에게는 혼인능력이 없다. 헌법상 혼인능력이 헌법적 구조원리에 따라 16세부터 일관되게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본법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에서는 1975년 1월 1일까지 16세 미만인 여성이 혼인할 수 있다는 면제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시 헌법적 이해로는 기본법 제6조 제1항의 범위에서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혼인을 일관되게 배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헌법상 중요한 변천의 조짐은 없다.

나. 외국법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된 특정 혼인의 국내 무효 명령은 결과적

으로 기본법 제6조 제1항상 혼인의 헌법적 구조원리를 위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16세 이전에 체결된 혼인을 독일에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롭고 자기책임적인 결정에 기초한 동등한 동반자관계와 공동 책임을 지는 혼인의 구조원리를 보장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은 이러한 혼인의 법적 구속에 예속되지 않게 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아동은 아직 성장 과정 중에 있으며, 지적·사회적 측면에서 성인에게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 역량, 지식 및 성숙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법적 선언과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험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는 혼인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인지하고, 동등한 동반자관계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기 위해 필요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된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는 헌법상 정당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기본법 제6조 제1항으로 보장되는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입법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체결된 혼인의 유효 여부를 당사자의 최소 연령에 따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입법자는 또한 혼인 당시 당사자가 특정 연령에 미달할 경우에 개별 사례에 대한 검토 없이 해당 혼인의 무효를 명할 수도 있다. 입법자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 적정하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된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는 현행 구조상 부적절하며 협의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1) 입법자는 미성년자 보호 및 법적 명확성 제고라는 헌법상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라는 목적을 통해 입법자는 아동이 사회공동체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고 장려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6세 미만의 아동이 발달상의 이유로 혼인과 관련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음은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충분히 확립되어 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은 제안된 기준이 조혼을 국제적으로 불법화하는 데 기여하는 한 헌법상 적법하다. 입법자의 이러한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아동, 특히 소녀들의 발달기회가 손상되기 때문에 유해한 관행으로 간주되는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 결혼에 대응하려는 유엔의 노력과도 일치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허용된다. 기본법 제24조 제1항<sup>9)</sup>에 명시된 국제협력을 위한 헌법적 결정은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가 직접 포함하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조혼의 당사자가 되는 미성년자의 보호도 가능하게 한다.

2)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는 해당 조항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하며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직간접적인 보호와 해당 혼인의 독일 내 무효와 관련된 법적 명확성은 문제된 조항에 의해 제고될 수 있다. 법 자체에 규정된 혼인이 독일 내에서 무효라는 점은 혼인 당시 16세 미만이었던 사람을 그러한 혼인의 결과 및 이와 관련될 수 있는 개인적 발전 기회의 상실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가령 혼인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연령과 발달상 온전히 스스로의 책임하에 체결되지 못한 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손상되어 온 자기결정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또한 미성년 배우자의 자기결정권이 혼인체결 이후 동거 중에도 계속해서 약화된다는 점을 상쇄할 수 있다.

문제된 규범은 개별 사안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상 부적합하지 않다. 입법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더 적은 부담과 동등한 효율성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규제 방법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특히, 규정이 적용되는 외국 혼인의 무효를 사례별로 사법적 신분확인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필요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입법자가 더 적

---

9) [독일 기본법 제24조 제1항]

연방은 법률에 의하여 국제기구에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은 부담과 동일한 효율성을 갖는다는 보장은 없다. 개별 절차에서의 무효 선언이 직접적인 법률을 통한 혼인의 독일 내 무효와 동일한 방식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바람직한 보호를 가져올지는 확실하지 않다. 신분관계를 평가하는 데는 오직 법원의 판결만이 결정적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누구도 미성년자의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력을 갖기 전까지는 16세 미만에 체결한 혼인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법적 효력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자기결정능력이 미숙하게 발달되었고 더 높은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미성년 배우자를 보호해야 한다. 확정력 있는 법원의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률을 통해 직접 명령되는 혼인 무효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려될 수 없다.

3) 하지만 문제된 조항은 협의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문제된 조항은 기본법 제6조 제1항상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해당 조항에서 혼인 무효의 후속 조치에 관한 규정과 16세 미만에 혼인을 체결한 사람이 성년이 되었을 때 독일 내에서 유효한 혼인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가) 외국에서 유효하게 체결된 혼인을 무효로 하는 것은 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구조원리와 관련되므로 혼인의 보호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 이미 외국에서 부부로 함께 살아 왔고 이러한 법형식의 기속을 유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독일의 법 영역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허용되지 않는다. 침해의 정도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외국법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한 혼인을 성년이 된 이후에 자기책임하에 결정하여 독일 내에서 유효한 혼인으로 지속할 기회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기본법 제6조 제1항이 보장하는 스스로 정한 사람과 혼인할 자유와 맞닿아 있다. 이 자유는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인간의 자유로운 인격적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이는 혼인의 자유의 핵심 요소에 맞

닿아 있다. 또한 외국법에 따라 이미 유효한 혼인 생활에서 동거할 권리가 배제된다. 미성년자로서 이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성년이 된 후에 자기책임하에 내린 결정으로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지속하고자 하는 소망은 미성년자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혼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지위와 관련된 법적 이점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커진다.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혼인 이후의 모든 청구권을 포함하여 금전적 및 비금전적 성격의 권리와 의무(혼인 중 동거, 부양 및 상속권)에 적용된다. 이혼이나 혼인취소의 경우와 달리,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소위) 배우자들에게 ‘혼인 중’ 동거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거나 일반적으로 혼인의 법적 효력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민법에서의 부당이득청구를 통한 보상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혼인 무효로 인한 재정적 결과를 명확히 하는 구체적인 사법 절차는 없다. 혼인 무효 명령에 따라 해당 당사자는 혼인 상태와 관련된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할 수 없다.

(나) 입법자가 기본법 제6조 제1항의 혼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통해 직접적인 무효를 규정하면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독일 내에서 유효한 혼인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된 조항은 협의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외국법에 따라 유효한 기본법 제6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 혼인까지 포섭하는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서 혼인 무효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사회적·경제적 보호에 관해 고려해 볼 때 혼인이 무효인 경우, 혼인 이후의 청구권이 부재하다는 점이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에 적절치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한

혼인을 하게 되는 상황과 이유는 미성년 배우자가 나이든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혼인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인 요인으로는 거주지, 교육 수준, 가족의 경제적 수준 등이 꼽힌다. 본국에서는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게 된 중요한 경제적 이유가 독일로 이주하면서 중요성을 잃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지는 분명하지 않다. 비록 부부 모두에게 불리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혼인 후 청구가 항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혼인이 무효인 경우 그러한 청구에 대한 규율을 하지 않는 것은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적절치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달리 말하자면 16세 미만에 혼인하여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포함되는 당사자들이 16세 또는 17세에 혼인하여 혼인 후의 청구권이 적용되는 당사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 3. 결론

문제된 조항이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해서 해당 조항이 무효로 선언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선언은 불합치선언과 달리 계속적용명령과 병용될 수 없으므로 불분명한 법률적 사정과 맞물려 위헌법률인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를 임시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보다 더 위헌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계속적용명령과 병행하여 위헌적 상황을 방지하고 최소한 위헌적 효력을 경감할 수 있는 경과규정이 필요하다. 즉, 독일 내에서 무효인 혼인에서 미성년자의 부양청구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민법규정(부부 간의 부양의무)의 준용을 명하는 경과규정이 필요하다.

## V. 결정의 의의

연방헌법재판소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외국에서 체결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시행법 제13조 제3항 제1호가 기본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17년 연방의회에서 증가하는 난민을 감안하여 제정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제청한 연방법원은 개별 사안에 관한 심사 없이 자동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는 점이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그러한 규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부양청구권이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의 혼인 지속 여부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점은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조혼을 추방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sup>10)</sup>이라는 환영도 있었지만, 개별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혼인을 무효화하는 규정은 당사자들에게 보호가 아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이는 불쾌한 상징적 입법의 일례라며 이전의 개별 심사제도로 회귀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sup>11)</sup>

---

10)

<https://www.sueddeutsche.de/politik/bundesverfassungsgericht-kinderehe-kinderschutz-nach-besserung-1.5777789?reduced=true> (2023. 8. 22. 방문)

11) <https://taz.de/Verfassungsgericht-zu-Kinderehen/!5921587/> (2023. 8. 22. 방문)